

범주: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발행일: 09/12/11

번호: D-160

주제: 공석 처리 방법을 포함한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출 절차

페이지: 1 중 6

변경사항 요약

본 규정서는 이 규정서가 게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2009년 3월 11일자 교육감 규정 D-160을 갱신 및 대체한다.

변경사항:

-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itywide Council on High Schools: CCHS)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10인의 투표인(각 보로 당 2인),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itywide Council on Special Education: CCSE)에서 지명한 1인의 투표인, 공립 고등학교에서 이중언어 또는 제 2외국어로써의 영어 프로그램에서 학습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에서 지명한 1인의 투표인 및 뉴욕시 공익 옹호실(Public Advocate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지명한 뉴욕시에 거주하며 폭 넓은 비즈니스, 사업 또는 교육 경험과 지식을 갖춘 1인의 투표인을 포함, 13명의 투표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CCHS는 임기 1년의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을 포함한다. (페이지 1, 개요 및 페이지 3-4, 섹션 V 참조)
- CCHS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에서 교육정책 패널(Panel for Educational Policy)을 배제하기 위해 자격사항 부분이 개정되었다. (페이지 1, 섹션 I.A.3. 참조)
- 학부모 회(parents' associations: PA) 또는 학부모-교사회(parent-teachers' associations: PTA)의 회장 및 임원들이 CEC에서 활동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후보로 출마한 PA/PTA 회장 및 임원들은 선출 과정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 회장 또는 임원이 후보로 출마한 PA/PTA의 경우 해당 인사를 대신하여 투표할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페이지 2, 섹션 III 참조)
- 공석을 채우는 절차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다: (1) 고등학교 학부모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서면으로 추천을 할 기회를 갖게 되며 공석이 채워지기 전에 CCHS와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 CCSE 또는 CCELL에서 지명한 자리가 공석이 될 때는 지명을 한 위원회에서 나머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활동할 위원을 지명한다; (3)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에는 공익 옹호실에서 나머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활동할 위원을 지명한다. (페이지 5, 섹션 IX 참조)

개요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itywide Council on High Schools: CCHS)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13인의 위원 및 투표권이 없는 1인의 학생 위원으로 구성된다. 13인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에는 본 규정서에서 제창한 절차에 부합하여 선출된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부모 10인 (이하 “학부모 위원”);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itywide Council on Special Education: CCSE)에서 지명한 1인 (이하 “CCSE 지명인”);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에서 지명한 1인 (이하 “CCELL 지명인”); 및 뉴욕시 공익 옹호실 (Public Advocate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지명한 1인 (이하 “공립 옹호실 지명인”)등이 포함된다. 본 규정서는 CCHS 위원의 자격요건 및 추천과 선출 절차를 상술한다. 또한 위원직의 공석 발생시 충원 절차를 제공한다. CCHS는 뉴욕주 공개회의 법(New York Open Meetings Law)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I. 자격요건

A. 학부모 위원 및 CCSE, CCELL과 공익 옹호실 지명 위원

1. 고등학교 학부모만이¹ CCHS에 본인을 추천할 자격이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 a. 선출직 공무원이나 선출 또는 임명되는 정당의 보직 (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위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을 맡고 있는 사람;
 - b. 현직 교육청 직원;
 - c.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뉴욕시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위원회 또는 CEC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리고
 - d.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에 소속된 사람
3. 또한 다음의 사람들도 활동 자격이 없다:
 - a. 교육정책 패널 위원;
 - b.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타이틀 I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협회, 팀, 협의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해당 협회, 팀, 협의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리고
 - c. 교육청 윤리담당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금전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¹ 학부모란 부모(출산 또는 입양, 계부와 계모 또는 수양 부모로서),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에게 부모에 해당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의미한다. 부모에 해당하는 관계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의 보호자 후견권을 행사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 학생 위원

재학중인 학교의 학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활동하며, 활동하는 학년도 동안에 12학년이 되는 고등학교 학생은 뉴욕시 학생 자문 위원회(Citywide Student Advisory Council: CSAC)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가추천 할 자격이 있다. 본 규정서에서는 약 30 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학년으로 간주한다.

II. 학부모 추천

A. CCHS에서 활동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신청서 및 공개 양식을 온라인 www.powertotheparents.org²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가추천할 수 있다. 가정참여 지원실(The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OFEA)은 이 웹사이트에 자가추천 제출 일정을 게시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학부모는 OFEA에 연락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및 인근 협력기관에 관해 문의한다.

B. 각 추천서의 일부(성명,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본인의 배경 및 활동 내역, 개인 성명과 학교 규모)가 학부모 및 일반의 검토를 위해 www.powertotheparents.org에 게시된다.

III. 선출자(SELECTOR)

CCHS의 학부모 위원 선출자는 각 보로의 모든 고등학교³로부터 교육감 A-660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3인의 PA/PTA 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선출 과정에 출마한 PA/PTA 임원들은 해당 선출과정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 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원이 있다면 선출 과정을 진행할 목적으로 PA/PTA 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IV.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

A. 후보자 포럼

1.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와 협력하여 가정참여 지원실에서는 후보자가 선출자 및 기타 학부모 및 관련된 인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보로에서 후보자 포럼을 주관한다.
2. 각 보로 고등학교 회장 위원회는 추가적인 후보자 포럼을 주관할 수 있다. 포럼을 주관하기 전에 보로 고등학교 회장 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후보를 포럼에 초청해야 하며 해당 포럼을 주관하기 전에 OFEA에 연락하여야 한다.

B. 권고 투표(Advisory Vote)

후보자 포럼 진행 후 모든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권고 투표가 웹사이트 www.powertotheparents.org에서 실시된다. OFEA는 권고 투표에 관한 일정을 게시한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의 OSIS 번호 및 OSIS와 연계된 우편번호를 비밀번호⁴로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중인 보로에 CCHS 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 투표 스크린을 접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최대 10명의 후보자에 관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권고 투표는 각 학교로부터의 투표 결과를 선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각 PA/PTA 회장은 반드시 PA/PTA 회원에게 권고 투표의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V. 선출 절차

A. 학부모 위원 선출

1. 선출자는 반드시 www.powertotheparents.org에 접속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일단 접속한 후 선출자는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보로의 CCHS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름과 후보자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이름을 포함한 투표 스크린을 제공 받게 된다.

² 학부모는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한 곳에만 출마하도록 한다.

³ 공동 회장, 공동 서기 또는 공동 회계가 선출된 학교의 경우, PA/PTA 임원회의 기타 회원들이 어떤 공동 임원이 선출자로서 활동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⁴ 한 가정에 한 학교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 중이라도 한번만 투표할 수 있다.

각 선출자는 2인의 후보에 투표한다. OFEA는 투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선출자에게 제공한다.

2.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 a. 각 보로에서 가장 많은 수의 표를 획득한 2인의 후보는 자격사항의 증명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떤 학교도 섹션 V.A.2.c에 제시된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CCHS에 1인 이상이 학부모 대표를 배출할 수 없다.
- b. 만약 동일 학교에서 1명 이상의 출마자가 선출되었다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 적은 표를 얻은 이 학교의 기타 후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CCHS에 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의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 c. 섹션 V.A.2.b에 설명된 바와 같은 제한은, 제한 규정을 지키려면 10인 이하의 학부모만이 선출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후보들이 동일한 수의 표를 얻은 경우, 또는 처음에 10명보다 적은 수의 정원만이 충족된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1명에게만 투표한다.

- a. CCHS의 1개 직책 이상이 동일한 표를 기록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동일한 표를 얻은 후보자만이 재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된다.
- b. 동일한 표를 기록한 것이 아닌 이유로 1석 이상의 정원이 공석이어서 재선거를 시행할 때 이미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들은 재선거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으며 한 학교에서 1인의 학부모만이 선출될 수 있다는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 c. 재선거로 모든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V.A.3.a 및 V.A.3.b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일한 자격사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최초 선출절차 및 재선거 모두에서 표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면 공석은 본 규정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에 부합하여 채워질 수 있도록 남겨둔다.

4. 선출 절차를 마친 후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이나 이전에 보로에서 선출된 후보가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잃게 된다면 최초 선출 절차 기간 동안 해당 보로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⁵. 이런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들이 동일한 표를 얻게 된 경우 교육청의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통해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5.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B. CCSE의 지명

CCSE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1인을 투표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C. CCELL의 지명

CCELL은 뉴욕시 고등학교에서 이중언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서 학습하는 학생의 학부모 1인을 투표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⁵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서 섹션 IX.A.2 및 IX.A.3의 공석 절차가 적용된다.

D. 뉴욕시 공익 옹호실의 지명

뉴욕시 공익 옹호실은 투표인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해당 위원은 반드시 뉴욕시의 거주자이며 폭 넓은 비즈니스, 사업 또는 교육 경험과 지식을 갖춘 뉴욕시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 학생 위원의 지명

교육감의 뉴욕시 학생 자문 위원회(CSAC)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지명을 위한 추천을 한다.

VI. 조건/자격의 검토

학부모 후보의 조건부 선출 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는 후보가 CCHS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교육감이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이러한 교육감의 서면 결정이 발표된 지 7일 이내에 보로 및 가정참여 지원실의 중앙 사무실에서 일반에 공개하여 공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정에는 사실 및 해당 발표를 결정하는 법적 기반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감이 어떤 후보를 무자격자로 간주한 경우, 해당 보로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미 CCHS 대표를 선출한 학교 출신으로 활동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VII. 선거일정

CCHS의 선출은 2011년 5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다음 선거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며 이후 2년 마다 선거를 실시한다. 선출 절차는 90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절차 공개, 학부모 추천, 후보자 포럼, 고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권고 투표 및 선출자 투표에 할애되는 시간이 포함된다. 가정참여 지원실은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한 일정을 공표한다.

VIII. 사퇴

A. 학부모 위원 및 CCSE와 CCELL 지명 위원

학부모 위원 및 CCSE와 CCELL 지명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교육감 앞으로 서면을 발송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감은 수석 가정지원 담당관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본인을 대변하여 위원의 사퇴를 수리하도록 한다. CCSE와 CCELL 지명 위원들은 또한 지명 받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를 통보하고 이 통지를 지명 받은 위원회 회장 앞으로 통보한다. 사퇴는 수석 가정지원 담당관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퇴를 철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B. 공익 옹호실 지명 위원

공익 옹호실이 지명한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공익 옹호실 앞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퇴는 공익 옹호실에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 공익 옹호실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퇴를 철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C. 학생 위원

학생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교육감 앞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퇴는 교육감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접수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퇴를 철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IX. 공석

A. 학부모, CCSE 및 CCELL 지명 위원 및 공익 옹호실 지명 위원의 공석 발생

1. 만약 CCHS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CCHS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된다.⁶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CHS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공익 옹호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CCSE 및 CCELL 지명 위원의 불참은 CCHS 업무 총괄 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사유가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CHS는 정기 회의에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외 공익 옹호실, CCSE 및 CCELL 중 해당 부서)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한다.
2. 사퇴 또는 학부모 위원의 제명으로 CCHS에 공석이 발생하면 CCHS는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운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서면 추천 및 공석을 채우기 전에 CCHS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CCSE 또는 CCELL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지명을 했던 위원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을 할 위원을 지명한다.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을 할 위원을 지명한다.
3.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CCHS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한다. CCHS에서 기타 이유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이 공석을 채울 수도 있다.

B.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의 공석 발생의 경우 CSAC는 이전에 교육감에게 추천되었던 다른 졸업반 학생을 추천한다. 교육감은 CCHS 및 가정참여 지원실에 본인의 지명 사실을 알린다.

X. 이의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XI. 기술적인 지원

가정참여 지원실에서 본 규정서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규정서에 관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한다:

전화: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팩스:
212-374-2323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212-374-0076

⁶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참의 적절한 사유로 성립된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CHS 위원 본인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 등의 법원 출석 의무, 군인의 의무, CCHS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CHS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